

우리가 만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 시민 간담회

평등의 약속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여
현장참석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현장 참석이 어렵더라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구글링크에 적어주세요.

bit.ly/equalityact-meeting

문자통역/수어통역이 있습니다.

중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상민TV, 권인숙TV

2021. 7. 9.
14:00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김상희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평등법, 어떻게 평등을 약속할 것인가

0. 들어가며

2007년 정부입법 발의 후 차별금지법은 ‘동성에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만든 찬반 구도에 놓여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사회에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아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제대로 논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2021년 6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어 국회 상임위원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한국사회의 차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별하게 해달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잠식되었던 공론장에, 차별의 다양한 면면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의미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넘어 ‘어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1. 차별금지사유는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1) 차별금지사유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의 정체성을 가시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동안 삶의 본질적 의미를 형성하는 일부로서 지니게 되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체성은 사회구성원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가로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크나큰 도전이 되는 조건에 놓이게 되고 사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료시민으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거나 불합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통해서만 특정한 정체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의 구조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만듭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그동안 비가시화된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별정체성 등 일부 차별금지사유를 문제 삼는 이들이 다른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2) 모든 사람은 모든 차별금지사유에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담긴 차별금지사유는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속성,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를 지목하는 것이고, 이는 한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직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장애학생의 비장애인 부모가 함께 겪게 되기도 하며,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은 출신국가뿐만 아니라 피부색, 종교, 성별, 학력 등 다양한 사유에서 기인하는 차별을 겪게 됩니다. 히잡 착용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한 사건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이기도 합니다. 차별을 규제하는 현행 법령이 성별, 장애, 연령 등 제한적 사유와 고용 등의 제한된 영역에 간혀 있다 보니 현실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각의 차별금지사유마다 개별법을 만드는 방식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가 모두 담기는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 잠재한 여러 차별을 드러내고 바꿔가자는 약속으로서도 필요합니다.

2. 차별 받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도와야 합니다

1) 차별 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차별 진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2020년까지 접수된 차별 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46.7%이며, 그 다음은 성희롱 9.7%입니다.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차별 받았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쉽게 기대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성희롱이 문제로 인식되고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받은 차별에 대응했을 때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사건 중 그 뒤를 잇는 '사회적 신분'(8.6%)은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차별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졌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해 국가가 무언가 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하루아침에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다릅니다. 차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위치에서 맞설 수 있는 근거, 자신이 맞선다면 사회가 귀 기울이며 함께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차별금지와 평등의 선언 자체가 차별받은 사람들에게 광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2) 차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절차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71.0%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응을 하는 경우에도 71.2%는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별받은 사람들에게 국가는 없는 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의 부재(40.0%)였습니다. 구제절차에 실효성이 있다면 61.0%가 대응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별 받은 사람들이 대응하지 않은 두번째 이유입니다. 30.8%의 응답자는 '보다

심각한 문제 우려'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진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겪어온 일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배치전환, 전보, 퇴사 등 각종 불이익에 처하기 때문에 차별을 알리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부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 피해 주장은 개인의 피해이기도 하지만 유사한 차별을 인지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출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등의 차별 피해는 우리사회가 임신출산과 아이 돌봄의 조건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색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차별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차별피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차별의 개념과 차별행위의 양상을 익히고 참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 받는 경험이 대등한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학교와 학생, 사용자와 피고용인, 회사와 구직자, 다수와 소수 등 이미 대등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위에서 짚은 것처럼, 차별에 대응하려고 할 때 약자의 편에 국가가 있다는 선언,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욱 근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합니다. 바로 '차별'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첫째, 직접차별에 해당하지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되는 차별이 있습니다. 모집공고나 채용과정에서 성별이나 학력 등을 구분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면접에서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덜 우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경우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지만 그러한 차별로 누군가 탈락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 판단이 유예되곤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차별행위로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간접차별과 차별적 괴롭힘 등 차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 제공되고 적극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입증책임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차별로 보이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행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피해자가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나 제도가 차별의 효과를 낳았음을 피해자가 주장한다면,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상대가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을, 회사가 '경영'을 이유로 특정집단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모든 것을 입증하도록 한다면 차별의 핑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3. 변화의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1) 차별의 인정은 대안을 찾기 위한 시작입니다

차별행위의 인정은 도덕의 문제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놓인 차별의 구조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면접에서 불리한 질문이 차별이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꼭 필요한 질문

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직급을 구분하거나 서비스를 달리 제공하는 것을 차별로 인정하게 되면, 학벌의 위계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성소수자나 무슬림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차별로 인정하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이웃으로서 함께 살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한 식당에서 차별을 인정한 후 본사가 장애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게 된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차별의 인정은 우리사회의 부족함을 깨닫는 과정이자 우리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빛는 과정입니다.

2)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재발 방지의 시작입니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누군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것은, 그가 특수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기보다, 만연한 차별의 실례를 먼저 고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별행위의 중지와 피해의 원상회복을 포함하여 차별시정권고와 차별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재발 방지의 시작이 됩니다. 차별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이들이 차별을 지적당했을 때 더욱 빠르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돕고,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과정으로서 차별시정권고가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므로 다양한 규율 조치를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용기에 뒤따라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시작이 아니라 기본권의 시작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으로 사회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갈등을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차별은 사회적 소수자가 부딪치게 되는 갈등을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상태를 지속시킵니다. 페미니스트거나 무슬림이거나 성소수자, 대학 비진학자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돌리고 사회적 문제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을 사회적 문제로 등장시킬 때 비로소 갈등은 해결의 방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갈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달리,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저마다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등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 차별금지의 약속과 함께 권리가 실질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패널 발언 1.

• 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학기를 끝으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24살 수빈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수많은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든 여성 청년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 청년들은 노동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가 된 이후에도 수많은 차별을 겪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탈락합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계획을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잠재적 '아내' 혹은 '엄마'로 간주되어 오래 일하지 않을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다르게 고시해 두는 회사를 보고 쓴웃음을 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뽑지 않는다는 구인 공고를 보고 자기 신념을 숨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페미니즘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좁은 문을 뚫고 취직을 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결과는 승진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남성들이 정수기를 가는 것이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직장에서까지 '가사노동'으로 여겨지는 온갖 일들을 떠안게 되는 여성들은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에 동의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페미니즘을 미워하는 2030 남성들조차도 성차별주의자를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성차별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페미니스트임을 밝히고 나면 질타의 눈초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한 사람은 이상하고 예민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저의 이러한 이야기마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민하고 이상한,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주제에 피해의식에 찌든 스물 넷 '여자에'의 투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자기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이 시대 수많은 2030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제 이야기는 투정도 피해의식도 아닙니다. 여성들의 현실이고 여성들의 삶입니다.

페미니스트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고 혐오입니다.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 아픈 몸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 외국인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차별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제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닌 특성을 이유로 그를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ですよ.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그 대답이 달라집니다. 차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차별금지법이 생기는 데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싫은 것을 싫다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근거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가 사회적 통합을 이유로 지우고 배제하고 밀쳐냈던 사람들과, 이제는 함께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법입니다. 비록 포괄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되는 법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발화 자체는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은 개인의 발화라고 해도 제재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만으로 우리 사회가 일순간 180도 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겪어 온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살리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기존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들을 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구제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한 데 통합하고, 왜 우리 사회가 소수자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를 알려주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개별 법안 이상의 선언적인 가치를 가지는, 차별을 끝내는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 여성 청년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소수자들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조금은 더 미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부재로 지금도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개인에게 주는 무게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로 인해 가장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바라봐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이 없는 사회에서는 숨쉴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아니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2021년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가 되어, 우리 사회가일보 전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패널 발언 2.

• 박동찬

반갑습니다. 한국살이 7년 차 이주민 당사자이자 서울 소재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유학생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20대,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고등교육까지 이수한 사람으로서 언뜻 차별과 거리가 멀어 보이겠지만, 출신국과 조금은 별난 정체성 때문에 어쩌면 가장 복잡적이고 전형적인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희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동포, 재중동포, 중국계 한국인 등이 있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소위 ‘조선족’이라고 말씀드리면 뭔가 확 와닿을 것입니다. ‘조선족’ 용어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차별적 현실과 맥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불법체류자, 경계해야 할 문제적 집단, 잠재적 범죄자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대중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꾸준히 소비되고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상영해 흥행 가도를 달렸던 <청년경찰>을 기억하시는지요,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긴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이 자주 나요. 경찰도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 대림동 골목으로 진입하자 택시 기사가 주인공한테 한 말입니다. 영화는 허구적 서사이기에 보통 실제 지명과 가게명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경찰>을 통해 노출된 장소와 가게는 실제로 대림동의 중국동포들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일순에 그 가게와 동네는 여성의 난자를 추출하고 장기를 밀매하는 범죄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청년경찰>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황해>, <카운트다운>, <차이나 블루>, <공모조들>, <신세계>, <차이나타운>, <범죄도시> 등에서 조선족은 일관되게 조폭이나 범죄자, 청부살인업자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의 문제적 재현 때문에 잔혹한 범죄자 캐릭터는 하나의 클리셰, 고정관념으로 정착했고 현실 사회 속의 인식에마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즉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불편하고 위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영화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공포를 재생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좀 지난 사건인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의자 김씨가 게임 아이디를 한자로 썼다는 이유 하나로 김씨가 조선족일 거라는 추측이 온라인에 파다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본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한국 태생이라는 입장을 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차별은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차별들은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더 가시적으로, 집약적으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위협적인데, 정부는 선별하고 구분하기에 바쁩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입니다. 33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며칠 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중 10조 4천억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주민에 관한 지급 가이드라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노동하고 납세하고 소비하며, 한국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해왔음에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들 모두를 정책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조세 정의에도, 인도주의 원칙에도,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극복 방안에도 반하는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등의 정책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었는데 이 또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외국인이 체질적으로 더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더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효과를 초래합니다. 당시 검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작업환경이 좁고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거지요. 그럼 그런 ‘환경’에 포커스를 두어야지 왜 특정 집단,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적이고, 균형적이지 않고, 의학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마스크 5부제’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건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 그리고 건보 의무가입이 정부에 의해 일괄 유예 조치된 유학생들은 초창기 마스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칠게 계산해 보았을 때 한국에 체류하는 250만 외국인 중 96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배제된 셈입니다.

이외 이주민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은 부지기수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고강도 노동,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 직장 이동의 자유 제한 등등. 너무 되풀이해온 얘기라 말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끝으로 현실정치인들이 자리하셨기 때문에 정치권발 이주민 차별을 두어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2019년, 모 정당의 대표는 “외국인은 한국에 기여가 없으니 임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 떨어진 어떤 후보는 본인의 낙선 원인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적지 않은 수의 친민주당 성향 조선족들한테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화가 반복되는 것은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이중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호명되다가도 정치·경제적 여건이 악화할 시에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한다는 점입니다.

이주민 사회가 한국 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어떤 특권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러하듯 누구를 정죄하겠다는 생각도 추호 없습니다. 그저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받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받지 않고,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지 않고, 모욕과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패널 발언 3.

• 메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성소수자부모모임에서 닉네임 ‘메이’로 활동 중인 ‘권명보’라고 합니다. 소속단체의 이름처럼, 저는 성소수자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1997년생으로, 올해 25살인 트랜스젠더 여성 청년입니다.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기 이전까지, 저는 살아오는 동안 성소수자에 대해 주변에서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지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통해 내가 왜 성소수자가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성별’이란 으레 ‘이성애자 여성’과 ‘이성애자 남성’만 존재한다고 당연히 여기며, 이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은 다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그 존재를 지워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로 자리 잡은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는 항상 분명하게 있어왔고 또 우리는 그들을 수없이 마주해 왔을 텐데, 이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 무관심, 차별과 혐오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 존재를 숨기며 살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일정 부분 동조하고 방조했던 저 또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올 1월에 대학졸업을 앞두고 본인의 성별정체성에 맞추어 성확정 수술을 받았고, 4월 말에 법원에서 법적성별정정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성별정체성을 깨닫게 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1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몸과 성별을 찾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지금도 여전히 트랜스젠더로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취업준비를 하면서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지만, 다른 청년들처럼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고민과 더불어 본인의 정체성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났을 때 마주할 상황을 더 염려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인 저로서는 너무나 미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나 정체성을 찾아 호르몬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 지금이나, 그 아이는 그 아이 그대로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도 소중한 귀한 자식일 뿐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여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대해 달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최근 자녀의 성확정 수술을 앞둔 부모모임의 한 어머니와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성확정 수술을 마치고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받고 나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 자녀분의 대답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외모와 주민등록상의 성별이 불일치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어디에서도 아르바이트 구직에서 마저도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접에서 떨어지는 등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잘리고, 학교생활에서 폭력에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는, 적어도 그런 일만은 막아 달라는 겁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적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이런 부당함에 어느 정도는 맞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 때문에 스러진 수많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부모모임에서 4년여차 활동하다 보니 성소수자 당사자분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으며, 주변의 또 다른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연대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다수결 원칙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수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에 대한 존중, 즉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삶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존중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잘 보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국회에서 모두 힘을 모아주셔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시민패널 발언 4.

• 도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력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러 나왔으니 오늘만큼은 제 학력을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입니다. 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분교에 다니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캠퍼스 간 소속을 바꾸는 '소속변경'이라는 제도인데요. 주로 미래캠퍼스에서 신촌캠퍼스로 소속을 바꿉니다. 이 제도를 두고 최근 학내에서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 간에 철저하게 서열을 정하고 미세한 점수차로 인서울을 하고 재수를 결심하는 학벌주의 사회가 바로 한국사회이니까요. 지방대에서 한국 최상위급의 대학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소속변경제도는 파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공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구요. 자신들과 같은 경쟁을 치르고 신촌캠퍼스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같은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신촌캠 학생과 미래캠 학생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고 동조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래캠 학생을 혐오했습니다. 소속변경 학생을 '소변충'이라고 불렀고 미래캠퍼스의 원래 이름이었던 '원주캠퍼스'는 '원세대'라고 불리며 조롱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신촌캠퍼스 학생과 미래캠퍼스 학생을 구분하고, 다르게 대우하라고. 학교라는 기관은 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학교는 미래캠퍼스 학생의 취업정보사이트 접근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분교생에 대한 혐오는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분교가 설립된 이래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분교생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적 입장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많은 본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듯 부당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미래캠 학생과 자신들을 '구분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질서가, 그 '공정함'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엄청난 학벌주의 신봉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의 신촌캠 학생들도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쉽게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직장은 너무나도 적고 경쟁률이 하늘을 치솟고, 원하는 직장에 모두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런 와중에 어렵게 취득한 대학 학위마저 아무나 손쉽게 딸 수 있는 것이 되고, 점점 무가치한 것이 되어가는 상황은 막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특정집단을 다른 집단과 학교를 기준으로 구분 짓고 기관에 차등적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기관이 그

것을 수용하는 것은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차별하자는 주장을 굳이 공정이 파괴되었다는 말로 둔갑시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등하자고 주장합니다. 학벌주의 체제를 강화한다고 우리의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연대해서 청년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중대 재해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산업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학벌주의와 경쟁체제는 청년연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군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청년은 동등합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공기처럼 내 주변에서 내가 숨 쉴 때마다 은근하게 나를 괴롭히며 사라지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학력차별은 미래캠퍼스 학생이 사회적 시선에 멍들게 하고 그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학교 정체성을 긍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학력차별이 미래캠퍼스 학생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신촌캠퍼스 학생에게도, 이 학벌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학벌주의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학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올라서는 경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경쟁에서 지고 남들보다 못한 처지가 되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도 싫지만 누군가를 이겨먹고 내가 올라서야만 하는 일도 끔찍합니다.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학벌주의 가치에 하루하루를 저당 잡혀 살고 있잖아요.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도가 압도적으로 낮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학벌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패널 발언 5.

• 김정덕

어떤 아동도 양육자 한 사람의 돌봄만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엄마, 한 사람으로서 아동을 이 사회는 얼마나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을까요?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양육자들은 현실 곳곳에서 환대는 고사하고 배제와 혐오의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키즈존’입니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며 마치 자궁과 생명을 맡겨 놓은 양 저출산률을 따지는 것에 비해, 정작 태어난 존재가 온전히 살기 어려운 사회·제도·환경 개선에는 무심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할 정도로, 아동과 양육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노키즈국가’ 일 뿐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권고일 뿐입니다. 여전히 노키즈존은 건재합니다. ‘노 배드 페런츠 존(No Bad Parents Zone)’도 생겼습니다. ‘아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는 나쁘다’는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는 차치하고라도, 서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아동과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러나저러나 문전박대 당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공공시설, 상업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거니와 한 게 아니라 돌보는 사람, 돌보는 여성, 엄마에 대한 혐오와 붙어있는 문제입니다. 출산율 낮다, 인구절벽이다 하지만 아동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해질수록 돌보는 이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공간은 협소해집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그쳐 좌절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차별금지 사유로 나이를 포함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을 들고 있습니다. 수유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영유아휴게 시설 및 유아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부가 아동과 양육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편의시설을 강제할 수

있다면 양육자와 아이에 대한 존중의 정도와 사회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야기에도 노키즈존이 있습니다. 마약이나 술을 판매하는 곳, 스트리퍼 클럽, 카지도 이렇게 세 군데 뿐입니다. 어린이가 안전이나 건강을 손상시키는 서비스나 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아동들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선의의 이유로 어린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 연령을 제한하여 “어린이가 없는 환경”이라는 단순한 환경 설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는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레스토랑은 차별입니다. 다른 고객이 소란을 피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 함부로 모유수유를 저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환대받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이 사회는 생명을 잃을 정도의 피해자로 호명될 때나 관심을 줍니다. 아동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에 빚진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쿨존에 과속방지턱과 감시카메라, 신호등을 의무로 설치하는 법이지요. 지금까지 없었던 게 이상할 정도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등하굣길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주차단속을 나오지 않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방관하는 등 행정당국의 무심은 여전히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두어야함에도 주변 민원 때문에 하기 어렵다며 나서지 않는 동안 아동들은 여전히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곳은 모두가 안전한 곳일 텐데, 자동차가 어린이보다 더 많이 태어나는 나라에선 늘 뒷전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노키즈존’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아동들은 여전히 최대 피해자들이지만 사회를 향해 목소리 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혐오장사를 하는 유튜브나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불시에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위협한다며 운전자들의 아동 혐오를 부추기는 이들은 혐오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해 피해자들은 물론 그와 같은 처지의 아동과 양육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육당국이 아동혐오에 나서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서울 등 일부 지역 교육청들은 학교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공문을 보내면서 언론보도를 인용했습니다. 극소수 아동들의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가리켜 법령에 ‘놀이’를 붙여 잘못된 표현을 썼습니다. 운전자 위협 행위는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 이름에 가해자성을 부여하고, ‘놀이’라는 표현으로 그 심각성을 축소시킨 명백한 혐오 표현입니다. 공적기관이나 언론이 스쿨존 내 문제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하는데 현재로서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동’만, ‘엄마’만 차별 받지 않는 사회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기꺼이 살고 싶을 것이며,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의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패널 발언 6.

• Muaz Razzaq

Hello everyone, I am Muaz Razzaq PhD student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your commitment and dedication for these important issues.

I would like to enlighten you regarding a very delicate matter being faced by the Muslim community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KNU has a huge Muslim community comprised of about 150 Muslim students from various nationalities. Furthermore, it is obligatory to offer the prayer five times a day in a congregation being a Muslim. So, the Mosque and community center are very vital for the Muslim residents of KNU and those living in suburbs.

I am really worried about the fact that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the Muslims is increasing rapidly since the start of the construction of the Mosque.

The discrimination has been strongly supported by few of the people including neighbors and some influential officials.

Few years ago, one of our neighbors started construction that was creating hindrance for others as it was narrowing the street. All the neighbors requested him to slightly change the structure as there was enough space on the other side. This would made it possible for the other people vehicles to have access to the doorstep of their houses. The district office asked them to co-operate, but they denied their request on which the district office told all other neighbors that they cannot do anything as the area belongs to the owner.

However, in our case, few of the neighbor's complaint about Mosque construction and the same district office directly suspended the construction of our Mosque without even listening anything from us.

When we approached the district office, they told us that the residents are opposing the mosque construction. This was more worrying that whether we are not the residents of the same place although we are living here since last 7-8 years.

Similarly, it will be quite shocking for you all to know that there are numerous numbers of Churches in the same vicinity about 60-70m apart, where our Mosque is being constructed. This

shows their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When the same question was asked by the media person from one of the neighbors, she replied clearly that those people of the Churches are Koreans.

You cannot believe that those opposing neighbors have distributed an un ethical and hatred pamphlets against the Muslims and religion ISLAM throughout the Daeheon-dong area in which they tried to defame our religion and spread hate against Muslims. The opposing party went to such an extent that they visited few house owners and asked them to expel Muslim students from their houses. More than 18 hated banners were hanged on roads in the surrounding of our university, causing too much disappointment in the Muslim community and psychologically affected our kids.

Even the opposing party protested against the professors and other Koreans who are raising voice against this discrimination and also asked the professors not to recruit Muslim Students.

Beside this, recently a complaint was registered in the district office regarding too much trash in the Mosque area. The district office without any investigation called us and commanded us to clean it. We were very surprised and immediately checked the CCTV footage. From which we came to know that the trash was thrown by few of the people who are against the construction of Mosque.

Here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n effective anti-discrimination law otherwise the situation can become worst which will affect the reputation of Korea around globe. We need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bodies to implement a law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and rights of minorities.

In the end, I as an ambassador of KNU Muslim students appreciate the efforts put by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NGO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중인 무아즈 라자크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이슈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구의 경북대학교 무슬림 공동체가 직면한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경북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150여명의 무슬림 학생들로 구성된 거대한 무슬림 공동체가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 신자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과 커뮤니티 센터는 경북대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에게 매우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원+시민 간담회

저는 사원의 건립이 시작된 이후 무슬림 차별과 혐오가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차별은 이웃과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주민 중 한 명이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길을 좁히는 방해물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에게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 구조를 조금만 바꾸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차량이 그들의 현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은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요청을 거절하였고 구청은 모든 주민들에게 사유지에 대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우, 몇몇 주민들이 사원 건설에 민원을 넣었고 같은 구청은 저희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채 직접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구청에 갔더니 그들은 주민들이 사원 건설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에 7-8년 전부터 살고 있음에도 이곳의 주민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사원이 건립되던 6-70미터 부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도 꽤 놀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슬림에 대하나 차별과 혐오를 보여줍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같은 질문을 물었을 때 인터뷰이는 매우 분명하게 교회의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웃들이 우리 종교를 훼손하고 무슬림에 대한 증오를 퍼뜨리려는 대현동 일대에 이슬람교와 이슬람교 ISLAM에 대한 비윤리적인 혐오적 팸플릿을 배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몇 집주인들을 방문하여 무슬림 학생들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18개이상의 혐오적인 배너가 우리 학교를 둘러싼 도로에 걸렸고, 무슬림 공동체에 큰 실망을 안긴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위하고 교수에게 무슬림 학생을 받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게다가, 최근 사원이 있는 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됩니다. 구청은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저희는 매우 놀랐고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쓰레기는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던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야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국제적인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보호를 실행하려면 정부와 국제사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 무슬림 학생을 대표하여 인권단체와 NGO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시민 간담회 : 시민의견

차금법을 발의한 의원분들 감사합니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을 정하자.

평등법 가을 국회 때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기는 차별받기위해 태어난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존중되는 사회. 그게 선진국 아닌가요!

있는 그대로 존재를 인정받기위한 첫걸음 차별금지법안을 꼭 통과시켜요

부모님께 커밍아웃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학교라는 공간이 보기와 다르게 '차별 덩어리' 입을 알 수 있습니다. 체육과 수업에는 항상 남녀 간의 평가격차가 다르고, 남녀로 분반을 하거나, 남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중학생 입장금지, 고등학생부터 입장가능 등과 같은 나이차별적 공간들을 여럿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사회에 필요한지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건강장애를 아십니까? 저희 아이는 건강장애학생입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학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저희 아이는 중증천식을 앓고 있고, 천식 증상이 미세먼지로 인해 발현됩니다.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정화장치가 학교에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5년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니 또래집단과의 관계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학습결손도 심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문제가 더 악화되어지는 것이 뻔 한 상황이라 학교와 교육청에 환기장치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엔 환기설비가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일반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대답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속한 1개 학급만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수업의 절반이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아이는 절반의 교육밖에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학교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오히려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얘기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금지)는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교육기회부여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장애를 가진 저희 아이를 배제하고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은 현재 저희 아이의 경우 외에도 여러 교육적 서비스를 받지 못해 교육에서 배제되고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 년 동안 차별을 받아오다가 결국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부모에게 자퇴를 돌려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꿈사랑건강장애부모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다른 건강장애 부모님들과 건강장애학생의 박탈된 교육권 확보와 공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저희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저희 아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 명의 소외되는 아이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차별입니다. 진로, 임금, 노동, 심지어 죽음도 학벌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는 사회입니다. 학력, 학벌 차별이 당연한 나라는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을 좌절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학력, 학벌은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에서는 5.17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누구나 발언대'라는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애인, 이주민 인권활동가, 각계의 성소수자들, 에이즈감염인, 간성으로 태어나신 분, 여성주의 활동가 등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우리 사회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은 발의하신 분들과 이 행사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사실입니다. 그걸 더 설득하고 전파해줄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도 있습니다. 당에 상관없이 더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10만동의 청원은 당사자들이 일궈냈습니다. 이제 정부가 앞장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